##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

[부산지방법원 2010. 7. 27. [2009고합109,117(병합),140(병합),141(병합),553(병합)](분리)]



## 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

【검 사】 채대원

【변 호 인】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신동기 외 1인

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.

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의 점은 무죄.

[이유]

]

【이유】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[이유]

1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